## 콘도 회원권 운영 지침

제정 2023. 6. 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홍원(이하 "진홍원"이라 한다)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콘도"라 함은 진흥원에서 회원권을 구입한 민간기업 콘도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 2. "시설사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라 함은 콘도 이용자가 콘도 사용 시 콘도회사에 지불하는 객실이용료를 말하다.
- 3. "성수기"라 함은 콘도업체의 여름 및 겨울 성수기 운영 일정을 말한다.
- 4. "관리부서"란 콘도 회원권 관리 및 예약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이용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이용자) ① 콘도 이용대상자는 진흥원에 재직하는 임직원 본인 및 가족에 한하며, 모든 임직원은 동일한 조건으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해당 임직원은 회원권 이용이 제한된다.
  - ③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 중이 아닌 임직원도 콘도 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다.
  - ④ 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 기간 중인 임직원은 회원권 이용이 제한된다.
  - 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 제4조(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①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부서에서 지정 하는 예약사이트 상에서 콘도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관리부서는 예약사이트상 예약신청사항을 확인하여 선착순으로 예약대상자를 확정한 후, 콘도회사에 예약을 신청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객실예약번호를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송부한다.
- 제5조(성수기 및 연휴 기간 중의 이용) ①관리부서는 성수기 및 연휴 기간을 공지한다.
  - ②성수기, 연휴 기간은 해당 콘도업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③성수기 및 연휴 기간 중 신청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우선 이용자를 정한다.
  - 1. 1순위 : 신청자 중 최근 3년 동안 성수기 및 연휴 기간 중 콘도 이용 일수가 적은 자 순서로 우선 이용

- 2. 2순위 : 성수기 및 연휴 기간 콘도 이용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1년간 주말(공휴일 포함) 콘도 이용 일수가 적은 자 순서로 우선 이용
- 3. 3순위: 상기 2순위를 거쳐도 경합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직원이 입회하여 추첨으로 진행하며, 예비 2순위까지 선정한다.
- 제6조(이용신청의 변경·취소) 콘도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10일전까지 관리부서에게 변경·취소 의사를 전달해야한다.
- 제7조(이용료 및 변상책임) ① 콘도 이용에 따른 이용료와 인원초과·부대시설 사용 등에 따른 추가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 ② 이용자는 콘도 이용 시 제반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여야 하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년간 콘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콘도 이용과정에서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진흥원의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시설사용에 문제가 있어 콘도회사로부터 통보된 경우
  - 2. 콘도이용 예약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3. 무단으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제9조(콘도 회원권·이용권의 관리) ① 관리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콘도 회원권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콘도 회원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부서는 연간 1회 이상 회원권의 증감, 현황 및 그 밖에 운영 관련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임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관리부서는 콘도 별지 제2호 서식 이용관리 대장으로 임직원의 콘도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감독) 관리부서는 회원권 이용의 적정성 및 규정 위반을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2023, 6, 29.>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콘도 회원권 관리 대장											
콘도명	지역	회원번호	평형(객실타입, 숙박가능인원)	연간 숙박 일수	회원권 개시일	회원권 만료일					

콘도 이용관리 대장											
사번	성명	콘도명	지역	이용날짜	사용기간 (비수기/성수기, 평일/주말)	이용 객실 수	금액				